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6. 11.
시민보사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6월 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6년 6월 11일 제42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
-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음.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專 門 委 員 유제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라 더욱 우리사회에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 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때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기관인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바,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5076호, 1995.12.29공포)되어 법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회)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안과 같은 목적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반조성과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될 수도 있다고 보아 4호를 신설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사료되며 기타의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修正案의 要旨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 제9조 1항중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내용을 수정함.

나. 수정주요골자

- 조례안 제9조의 본문중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내용을 수정함.

5. 審査結果 : 수정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 6. 11.

제안자 : 시민보사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 제9조 1항중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내용을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조례안 제9조의 본문중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내용을 수정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1항 본문중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 1996. 6.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
-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음.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관련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없음

4. 조 례 (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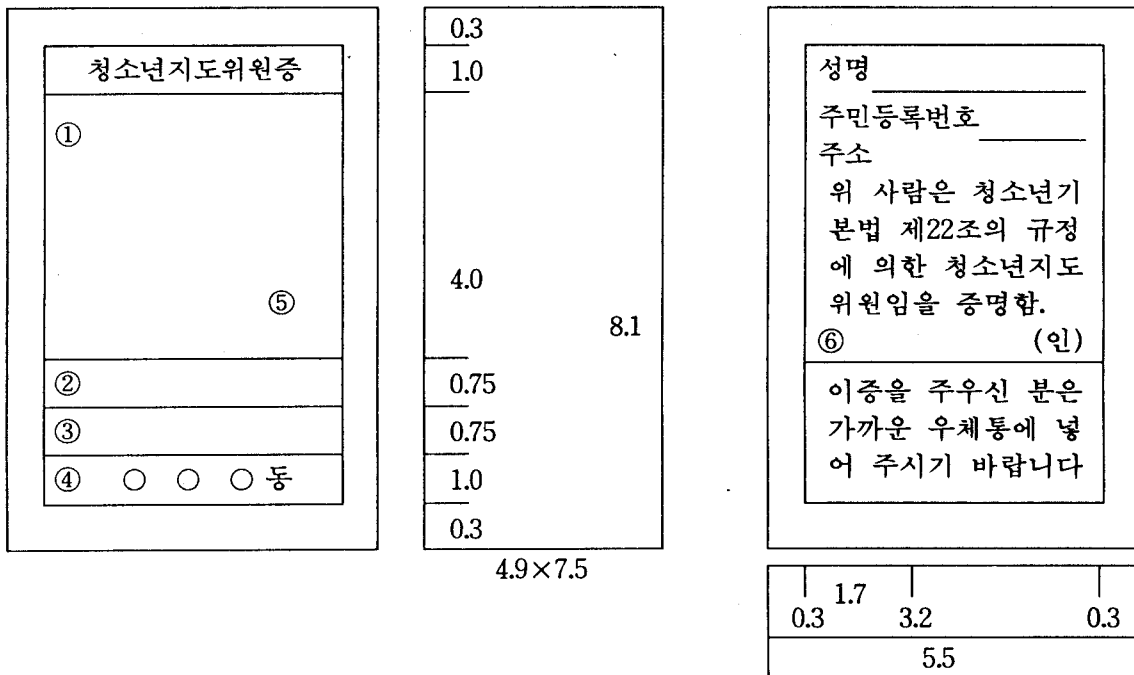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앞 면)

(단위 : cm)

(뒷 면)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0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 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